■ 고객 유의사항 확인

정기예금 재예치 확인

-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 재예치 기간은 당초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하며, 재예치 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초 신규 시 자동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매 만기 시마다 별도의 의사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은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퇴직연금 정기예금 재예치 특약] 정기예금 거치식예금약관 및 특약 제 6조 ①에 따라 동 예금의 만기일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재예치 하는 것으로 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집중투자 한도적용 및 투자한도 초과 시 타기관상품 자동운용확인 및 동의서

- 2011.12.01 및 2013.04.01부터 개정시행된 퇴직연금 금융감독원 감독규정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적립금 잔고 5천만원 이상 되는 경우, 신규, 추가입금, 재예치, 운용자산변경 시 당행 정기예금에 대한 운용한도가 집중투자한도(2013.04.01이후 50%,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와 5천만원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정기예금 집중투자한도 적용 을 받습니다.
- 신규, 추가입금 시 집중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한도 초과금액을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하여 사전에 정해놓은 타기관자동운용상품^{주1)}으로 운용하며 재예치 시 2011.12.01 이후 도래하는 재예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전일 기준으로 집중투자한도 위반여부 체크하여 위반 시, 한도위반금액은 자동 운용자산변경 처리 되어 타기관자동운용상품으로 매수되어 운용되며, 운용자산변경 시에는 운용자산변경 매수 시 집중투자한도 초과 여부 검증하여, 초과된 정기예금 매수금액은 타기관자동운용상품으로 매수되어 운용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1) 타기관자동운용상품 : 당행정기예금에 대한 집중투자한도 초과 시 초과분 매수를 위하여 당행에서 별도로 정하는 타기관 정기예금 상품
 - ※ 타기관자동운용상품은 상호 상품제공 협약에 의해 당행 정기예금과 가장 유사한 상품 으로 제공하며, 거래 상품제공기관은 운용기간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원리금보장상품 집중투자한도 적용 및 투자한도초과 시 타기관상품매수 및 자동 운용에 관한 충분한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